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028호

나. 발 의 자 : 김용석 의원(찬성자 14명)

다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사랑상품권의 활용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,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, 장애인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 등을 규정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2조의2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, 이용 편의 개선, 장애인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

- 서울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)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0년 6,510억원, 2021년 1조 816억원을 발행하였으며, 올해는 8,417억원을 발행할 예정임.

<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>

사업명	예산액	발행규모(예정액)
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·운영 사업	56억 5천 5백만원(전액시비)	817억원 (상반기 600억원, 하반기 217억원) ※ 법인용 상품권 100억원 포함(상반기)
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·운영 사업	당초 224억 6천만원(정부 균특보조금 56억원, 시비 168억 6천만원)	2,600억원 (추경 이후 발행예정)
	추가 400억원(국고보조금 100억원, 시비 300억원)	5,000억원 (new서울사랑상품권)

- 서울시 여론조사¹⁾에 따르면,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(40.6%), 소상공인 보호(21.2%), 가계지출부담 완화(20.1%), 전통시장 활성화(16.5%)에 유용하다고 응답해 정책목표에 충실히 부합한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음.

1) ‘서울시민대상 서울사랑상품권 만족도 여론조사’(2021.7.), 리얼미터.

- 한편, 서울시는 상품권의 판매·운영대행사인 ‘한국간편결제진흥원’ 이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한 판매대행점 자격요건²⁾에 미치지 못하고 협약기간이 만료(2021.12.31.)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‘신한컨소시엄’ 을 새로운 판매·운영대행사로 선정(2021.11.23.)하였음.

< 신한컨소시엄 참여사 현황 >

구분	업체명	역할
주사업자	신한카드	-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·운영 - 상품권 판매대행·가맹점 모집
공동사업자	신한은행	- 상품권 자금관리 - 은행거래 연계
	카카오페이	-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 - 정책홍보 알림톡 서비스
	티머니	- 상품권앱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충전·이용 시스템 구축

- 이에 따라 기존에 상품권 구매와 이용을 위해 사용되던 22개 모바일앱 대신 ‘신한컨소시엄’ 의 7개 모바일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, 가맹점 정보에 대한 이관 문제로 ‘한국간편결제진흥원’ 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다.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2조의2)

- 개정안은 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, 시민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상품권 발행과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.

2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, 판매,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“전자금융거래법”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
- 이 중 상품권의 구매·이용시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이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을 고려한 것임.
- 선불충전카드식이나 지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방식으로만 발행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상품권 이용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임.
- 이에 상품권 모바일앱을 이용할 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³⁾을 위한 ‘모바일접근성 인증’⁴⁾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.
 - 기존 상품권 모바일앱 22개 중 6개만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았으며, 신규 상품권 모바일앱 7개는 모두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음 [참고자료].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⁵⁾은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를 마련하고 있고, 서울시 조례⁶⁾에서도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.

3) 장애인·고령자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

4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이며, 유효기간은 1년임.

5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6)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」
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상품권의 이용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와 불편해소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의 대상을 정보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상품권 운영·판매대행사의 교체에 따라 연동되는 상품권 모바일앱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운영·판매대행사와의 계약 조건에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8

[참고자료]

□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사별 '모바일접근성' 인증 현황

NO	회사명	서비스앱	모바일접근성 인증여부	인증 유효기간	인증 만료여부
1	우리은행	우리 WON뱅킹	○	~22.8.15	
2	전북은행	뉴스마트뱅킹	○		
3	경남은행	BNK경남은행	○	~21.11.06	
4	광주은행	광주은행 개인뱅킹	○	~'22.10.05	
5	농협은행	올원뱅크	○		
6	농협중앙회	NH콕뱅크	○		
7	대구은행	IM샵	X		
8	부산은행	섬뱅크	X		
9	신한은행	신한 쓸	X		
10	우정사업본부	포스트페이	X		
11	궐랴사이머니트리	머니트리	X		
12	NHN페이코	페이코	X		
13	쿠콘	체크페이	X		
14	티머니	티머니페이	X		
15	비즈플레이	비플제로페이	X		
16	하렉스인포텍	유비페이	X		
17	디셈버컴퍼니	핀트	X		
18	KIS정보통신	제로페이온	X		
19	핀크	핀크(Finnq)	X		
20	세틀뱅크	010제로페이	X		
21	SK플래닛	시럽월렛	X		
22	KSNET	TAXI zeropay	X		

□ 서울페이+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사별 '모바일접근성' 인증 현황

NO	회사명	서비스앱	모바일접근성 인증여부	인증 유효기간	인증 만료여부
1	신한카드	서울Pay+	X		
2	티머니	티머니페이	X		
3	신한은행	신한쓸	X		
4	머니트리	머니트리	X		
5	신한카드	신한플레이	X		
6	카카오	카카오톡	X		
7	카카오페이	카카오페이	X		